

2023

유연근무제 지원제도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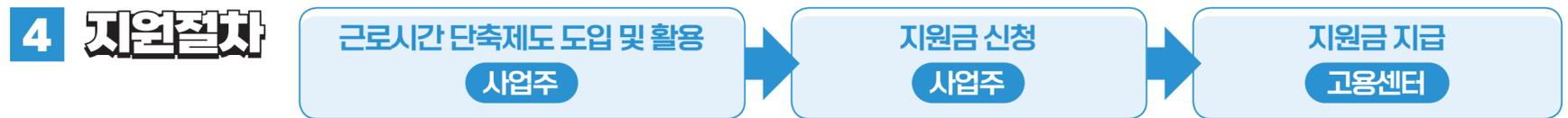
“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, 일생을 행복하게 ”



워라벨일자리 장려금

- 1 지원대상**
 -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 사업주
- 2 지원요건**
 - ① 6개월 이상 근로 ②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15~30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 단축기간 1개월 이상
 - ④ 전자·기계적 방식으로 출·퇴근시각 관리 ⑤ 연장근로 제한(월 10시간)

| 3 지원내용 | 지원수준 (단축 근로자 1인당) | 지원대상 |
|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장려금 : 월 30만원(정액) ● 임금감소액보전금 : 월 20만원(정액) (단,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) |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|



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

- 1 지원대상**
 - 소속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 사업주
- 2 지원요건**
 -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·승인 ② (선택근무 해당)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,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③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④ 전자·기계적 방식으로 출·퇴근시각 관리 (재택·원격근무는 근로자의 확인 서명 자료도 가능)

| 3 지원내용 | 유형 | 1개월 지급액 | | 최대 지급액 |
|--------|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| 재택·원격근무 | 15만원(월 6일~11일 활용) | 30만원(월 12일 이상 활용) | 360만원 |
| | 선택근무 | 30만원(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이상 단축 8회 이상) | | |



※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